

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

예규안

1. 제정이유

-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 청구의 집행(다음부터 “인도집행”이라 함)을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이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, 채무자의 점유 여부,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함(안 제2조)
- 집행관은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, 아동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함(안 제3조)
-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하고,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)

- 집행관은 노약자 등의 안전·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배려하고,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5조)
-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하여 현실적·구체적인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관은 취하의 권고,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, 일시정지,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(안 제6조)
-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,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함(안 제7조)

3.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

붙임과 같음

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(다음부터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(다음부터 ‘부동산 등’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(다음부터 “인도집행”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 집행 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,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도집행시의 조사 등)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

1.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 등과 인도집행 목적물의 동일성 여부
2. 채무자의 인도집행 목적물의 점유 여부
3. 그 밖에 인도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
제3조(인권존중 등) ① 집행관은 채무자·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관은 아동·노약자·임산부·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동에 대한 배려) ①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, 지적 능력, 심신 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,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노약자, 임산부,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) 집행관은 노약자, 임산부,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 안전·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,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집행관이 취할 조치)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하여 현실적·구체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인도집행을 하는 것이 가혹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취하의 권고
2.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연기, 일시정지
3. 그 밖에 적당한 처분

제7조(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) 제3조 내지 제6조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,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이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567